

서울특별시교육청 직업교육 활성화 조례안 심사보고서

| | |
|----------|-----|
| 의안 번호 | 476 |
|----------|-----|

2023년 3월 10일
교육위원회

I. 심사경과

1. 발의일자 및 발의자 : 2023년 2월 6일, 심미경 의원
2. 회부일자 : 2023년 2월 9일
3. 상정일자
 - 제316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 제5차 교육위원회
(2023년 3월 10일 상정, 원안가결)

II.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 심미경 의원)

1. 제안이유

- 직업계고등학교는 사회적 저출산에 따른 학령인구 감소, 대학 진학을 위한 일반계 고등학교 진학 집중, 직업계고등학교에 대한 학생·학부모 선호도 감소 및 부정적 인식 확산 등으로 신입생 모집에서부터 어려움을 겪는 등 운영에 있어 위기에 봉착해 있음.
- 이러한 상황에서 학생들에게 급변하는 기술 변화에 부합하는 다양한 직업교육 기회를 제공하여 효과적인 직업교육이 실시되도록 하여야 함.
- 이에 따라 직업계고등학교 학생이 전문기술인으로서의 자질을 함양하고 취업

역량을 강화하여 자기 주도적 미래인재가 되도록 직업교육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직업교육 활성화를 위한 교육감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3조).
- 교육감의 직업교육 기본계획 수립·시행 의무에 대해 규정함(안 제4조).
- 교육감의 직업교육 활성화 사업 실시 의무에 대해 규정함(안 제5조).

III. 검토보고 요지(수석전문위원 : 김창범)

1. 제안경위 및 주요내용

- 동 조례안은 2023년 2월 6일 심미경 의원에 의해 의안번호 제 476호로 발의되어 2023년 2월 9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 동 조례안은 직업교육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직업계 고등학교 학생이 전문기술인으로서의 자질을 함양하고 취업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발의되었습니다.

2. 주요 검토의견

가. 제정 취지에 대한 검토

- 현재 서울시 관내에는 80개의 직업계고등학교가 있으며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마이스터고등학교) 4교, 특성화고등학교 70교, 일반고등학교 3학년 학생을 선발하여 직업교육을 실시하는 산업·문화예술정보 학교 6교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 이 중 마이스터고등학교와 특성화고등학교는 각각 산업계의 수요에

직접 연계된 맞춤형 교육과정 운영과 산업현장에 필요한 인재 양성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 그러나 교육부와 한국교육개발원이 2022년 10월에 발표한 ‘2022년 직업계고 졸업자 취업 통계 조사 결과’에 따르면 서울시 관내 마이스터고·특성화고 졸업자의 표면적인 취업률은 52.2%, 55.5%, 57.7%로 매년 증가하고 있지만, 졸업자 중 실질 취업률은 매년 32% 안팎 수준으로 담보 상태에 머물러 있습니다¹⁾.

반면에 졸업자 중 진학자 비율은 34.7%, 40.5%, 41.1%로 매년 증가하며 취업자 수를 웃돌고 있습니다.

[표-1] 서울시 특성화고·마이스터고 취업률 현황

(단위: 명)

| 졸업연도 | 구분 | 졸업자 (A) | 취업자 (B) | 취업률 [B/(A-C-D-E)] *100 | 진학자 (C) | 입대자 (D) | 제외인정자 (E) |
|------|----------|---------------|--------------|------------------------------|--------------|------------|--------------|
| 2020 | 특성화고 | 14,105 | 4,391 | 50.5% | 5,084 | 219 | 114 |
| | 마이스터고 | 584 | 418 | 79.5% | 20 | 38 | - |
| | 계 | 14,689 | 4,809 | 52.2% | 5,104 | 257 | 114 |
| 2021 | 특성화고 | 12,544 | 3,700 | 53.5% | 5,295 | 239 | 93 |
| | 마이스터고 | 589 | 429 | 81.7% | 25 | 39 | - |
| | 계 | 13,133 | 4,129 | 55.5% | 5,320 | 278 | 93 |
| 2022 | 특성화고 | 12,472 | 3,749 | 55.5% | 5,341 | 282 | 100 |
| | 마이스터고 | 578 | 446 | 85.3% | 17 | 36 | 2 |
| | 계 | 13,050 | 4,195 | 57.7% | 5,358 | 318 | 102 |

1) 취업률은 통계청의 국가표준지표에 따라 졸업자 중 진학자와 입대자, 장기입원 등으로 취업이 불가능한 자를 제외함.

[표-2] 서울시 특성화고·마이스터고 취업 비율 및 진학 비율 현황

(단위: 명)

| 졸업 연도 | 구분 | 졸업자 (A) | 취업자 (B) | 취업 비율 (B/A)*100 | 진학자 (C) | 진학 비율 (C/A)*100 |
|-------|----------|---------------|--------------|--------------------|--------------|--------------------|
| 2020 | 특성화고 | 14,105 | 4,391 | 31.1% | 5,084 | 36.0% |
| | 마이스터고 | 584 | 418 | 71.6% | 20 | 3.4% |
| | 계 | 14,689 | 4,809 | 32.7% | 5,104 | 34.7% |
| 2021 | 특성화고 | 12,544 | 3,700 | 29.5% | 5,295 | 42.2% |
| | 마이스터고 | 589 | 429 | 72.8% | 25 | 4.2% |
| | 계 | 13,133 | 4,129 | 31.4% | 5,320 | 40.5% |
| 2022 | 특성화고 | 12,472 | 3,749 | 30.1% | 5,341 | 42.8% |
| | 마이스터고 | 578 | 446 | 77.2% | 17 | 2.9% |
| | 계 | 13,050 | 4,195 | 32.1% | 5,358 | 41.1% |

- 즉 직업계고를 졸업한 학생 중 취업자는 10명 중 3명에 불과하고, 취업과 기능인 양성이라는 당초 직업계고 교육방향과 달리 취업보다 진학을 선택하는 학생이 더 많아 실질적으로 직업계고는 일반고와의 차별성을 상실한 상황입니다.
- 또한 취업의 질과 안정성 측정 지표인 유지취업률(일정 기간 취업 상태 유지 비율)을 살펴보면, 2021년 4월에 취업한 서울시 직업계고 학생이 1년간 취업 상태를 유지한 비율은 전년 70.5%에 비해 감소한 68.5%로 이는 취업자 10명 중 3명이 1년 사이에 퇴사한다는 것을 의미하는바 일자리의 질적 수준 관리 또한 필요한 실정입니다.
- 아울러 제4차 산업혁명시대에 부합하는 직업계고 교육과정의 개선과 직업 기초능력·현장실무 중심 역량을 갖춘 인재 교육을 위한 환경조성 및 지원 확대가 절실히 요구되고 있습니다.

[표-3] 2020년 서울시 특성화고·마이스터고 졸업자 유지취업률 현황

(단위: 명)

| 구분 | 졸업자 | 본조사(2020.4.) | 1차 유지취업률 (2020.10.) | 2차 유지취업률 (2021.4.) |
|-----------|---------------|--------------|------------------------|-----------------------|
| 특성화고 | 14,105 | 4,391 | 3,548(80.8%) | 3,049(69.4%) |
| 마이스터고 | 584 | 418 | 380(90.9%) | 341(81.6%) |
| 합계 | 14,689 | 4,809 | 3,928(81.7%) | 3,390(70.5%) |

[표-4] 2021년 서울시 특성화고·마이스터고 졸업자 유지취업률 현황

(단위: 명)

| 구분 | 졸업자 | 본조사(2021.4.) | 1차 유지취업률 (2021.10.) | 2차 유지취업률 (2022.4.) |
|-----------|---------------|--------------|------------------------|-----------------------|
| 특성화고 | 12,544 | 3,700 | 3,018(81.6%) | 2,526(68.3%) |
| 마이스터고 | 589 | 429 | 386(90.0%) | 303(70.6%) |
| 합계 | 13,133 | 4,129 | 3,404(82.4%) | 2,829(68.5%) |

- 이러한 시점에서 동 조례안이 직업계고 학생의 직무능력과 취업역량 강화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미래인재 양성과 능력 중심 사회 구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은 시의적절한 입법조치라고 사료됩니다.

나. 조례안의 체계와 주요 조문별 검토

1) 조례안의 체계

- 동 조례안은 총칙 규정으로 목적, 정의, 책무(안 제1조~제3조)를 규정하였고 본칙 규정으로 직업교육 기본계획(안 제4조), 활성화 사업(안 제5조), 지도·감독(안 제6조), 협력체계 구축(안 제7조) 등을 규정하여 총 8개의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동 조례안은 전반적으로 조문 간 구성과 체계, 내용 등에 있어서 「자치법규 입법실무」 및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을 준수하고

있다는 점에서 조례 제정에 따른 별도의 문제는 없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2) 책무에 대한 검토(안 제3조)

- 안 제3조에서는 교육감으로 하여금 직업교육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고 이에 필요한 행·재정적 지원을 위해 노력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학교장은 학교 특성에 따라 직업교육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이와 관련하여 「교육기본법」은 지방자치단체가 직업교육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²⁾ 안 제3조에서 교육감에게 직업교육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도록 책무를 부여한 것은 관련 사업의 체계적인 추진을 위한 근거 마련 측면에서 타당한 입법조치라고 생각합니다.
- 아울러 단위학교의 노력 여하에 따라 학생 취업의 질적 수준 등 직업교육의 성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안 제3조에서 학교 특성에 따른 직업교육에 관한 학교장의 책무를 규정한 것은 바람직한 규정이라고 생각합니다.

3) 직업교육 기본계획에 대한 검토(안 제4조)

- 안 제4조는 교육감으로 하여금 직업교육 기본계획을 3년마다 수립·시행하도록 규정하면서 기본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과 기본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이와 관련하여 그동안 서울시교육청은 매년 ‘서울직업교육 주요업무 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바탕으로 관련 사업을 추진해왔으나 매년 수립되는 단기계획과 중장기계획의 수립 부재로 인해 사업 시행 시 혼선

2) 제21조(직업교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국민이 학교교육과 평생교육을 통하여 직업에 대한 소양과 능력을 계발하기 위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수립·실시하여야 한다.

을 겪는 사례도 발생하였습니다.³⁾

- 특히 직업교육 중장기계획의 수립은 직업교육 관련 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 분야별 특성에 맞는 정책을 거시적·체계적으로 검토하고 시행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중요성이 매우 강조되고 있으며 서울시교육청은 2022년 하반기에 ‘서울 고교단계 직업교육 중장기 발전 방안 정책연구’를 실시하였으며, 참고로 부산시교육청의 경우에도 금년에 직업계고 3개년 중기발전계획을 수립한바 있습니다.⁴⁾
- 따라서 안 제4조에서 교육감으로 하여금 직업교육 기본계획을 3년마다 수립·시행하도록 한 것은 서울시교육청이 중장기적 전략에 따라 직업교육 관련 사업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수행함으로써 직업교육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바람직한 입법적 조치라고 사료됩니다.

4) 활성화 사업에 대한 검토(안 제5조)

- 안 제5조는 교육감이 직업교육 활성화를 위해 매년 실시해야 하는 사업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 이와 관련하여 서울시교육청이 수립한 ‘2023 서울직업교육 주요업무 계획’ (진로직업교육과-1462, 2023. 2. 20.)을 살펴보면 서울시교육청은 5가지 중점과제(교육력 강화, 교육과정 내실화, 교육 기반 강화, 학생 역량 강화, 학생 진로 지원)를 설정하여 39개 영역에서 관련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바,

안 제5조는 향후 서울시교육청이 관련 사업을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직업교육이 내실 있게 시행될 수 있도록 그 기반을 조성한다

3) 보도자료: 수십억 들여 직업계고→AI고 바꿨는데 충원을 ‘뚝’ ..."세심한 대책 필요"(서울경제, 2022.10.15.)

4) 보도자료: 부산시교육청, 직업계고 중기발전계획(2023~2025) 수립(한국강사신문, 2023.2.1.)

는 점에서 바람직한 입법조치라고 생각합니다.

- 참고로 서울시교육청은 동 조례안과 관련하여 별도의 의견이 없음을 밝혔습니다(행정관리담당관-1720, 2023. 2. 13.).

IV.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V. 토론요지 : 없음.

VI. 수정안의 요지 : 해당 없음.

VII. 심사결과 : 원안 가결(재석의원 전원 찬성).

VIII. 소수의견 요지 : 없음.

IX.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서울특별시교육청 직업교육 활성화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직업교육의 지속적인 질적 발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학생에게 소질과 적성에 맞는 다양한 직업교육 기회를 제공하고 미래역량을 강화함으로써 자기 주도적 미래인재 양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직업교육”이란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제2조제1호에 따라 학생에게 취업 또는 직무수행에 필요한 지식·기술 및 태도를 습득·향상시키기 위하여 실시하는 교육을 말한다.
2. “직업계고등학교”란 다음 각 목의 학교를 말한다.
 - 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0조제1항제10호에 따른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
 - 나.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1조제1항에 따른 특성화고등학교 중 특정 분야의 인재 양성을 목적으로 하는 교육을 전문적으로 실시하는 고등학교
 - 다. 「서울특별시립학교 설치 조례」 제2조제2호에 따른 각종학교 중 산업·문화예술정보학교

제3조(책무) ① 서울특별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직업교육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고, 이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학교장은 학교 특성에 따라 직업교육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직업교육 기본계획) ① 교육감은 국가 및 지역 산업에 부합하는 인재 양성을 위해 직업교육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3년마다 수립·시행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직업교육의 기본방향 및 목표
2. 직업교육 활성화를 위한 추진 과제
3. 직업교육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4. 직업교육 활성화를 위한 재원확보 방안에 관한 사항
5. 직업계고등학교 교원 운영 및 전문성 향상에 관한 사항
6. 직업계고등학교 운영 지원 및 성과 평가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교육감은 기본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5조(활성화 사업) 교육감은 직업교육 활성화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매년 실시한다.

1. 직업계고등학교 체제 개편 및 학과 개편 지원에 관한 사업
2. 직업계고등학교 학생 맞춤형 교육과정 운영 지원에 관한 사업
3. 직업계고등학교 교원 전문성 강화 지원에 관한 사업
4. 직업계고등학교 학생 역량 강화 지원에 관한 사업
5. 직업계고등학교 학생의 취·창업 및 진학 등 진로 지원에 관한 사업
6. 신산업·신기술 분야 등에 대한 직업능력 함양 지원에 관한 사업
7. 산업현장 맞춤형 실험·실습 환경 구축 지원에 관한 사업
8. 직업계고등학교 인식개선 및 입시·홍보 지원에 관한 사업
9. 학생 및 학부모·시민 대상 직업체험에 관한 사업

10. 직업교육 관련 기관의 학생 및 교원 대상 직업교육 활성화에 관한 사업
11.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지도·감독) 교육감은 직업계고등학교의 직업교육 운영에 대하여 지도·감독하고, 컨설팅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7조(협력체계 구축) 교육감은 직업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산업체 및 관계 기관·단체 등과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한다.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